



기술정책 협동과정 내규

2018년 9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기술정책 협동과정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입학	1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1
제4장. 교과목 구성, 수업 및 학점	2
제5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3
제6장. 학위논문	4
제7장. 조직	8
제8장. 장학금	8
제9장. 준용	9
부칙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內規)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기술정책 협동과정 (이하 “본 학과”라 한다)의 교육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과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기술정책 협동과정(Graduate Program in Technology Policy)이라 부른다.

제3조(교육목표) 본 학과는 기술정책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술정책 개발능력을 고도화 하고, 과학기술적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국가 인재를 양성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며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4조(수여학위) 본 학과는 공학 석사, 공학 박사, 기술정책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학생선발) 본 학과는 학기단위로 학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6조(입학전형) 본 학과의 입학전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 하고,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 전형으로 한다.

제7조(선발) 서류심사는 연구계획과 기초적인 전공에 대한 이수 실적 등에 주안점을 두고, 구술시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과 적성을 주로 평가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8조(등록) ①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처음 4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학생은 처음 6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휴학) ①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복무 기간, 출산 및 육아기간(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

제10조(복학) 휴학자로서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교과목 구성, 수업 및 학점

제11조(교과목 구성) 본 학과의 교과목은 개설한 과목들 중에서 강좌내용을 고려하여 변경, 통합, 신설, 폐지 등 재조정하도록 한다.

제12조(교과목 신설)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신규교과목 개설제안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교과목 폐지) 2년 동안 한번도 개설되지 않았거나, 개설할 계획이 없는 교과목은 폐지할 수 있다.

제14조(교과목 운영) ① 개별연구지도 I, II(석사과정) 및 개별연구지도 IV, V, VI(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는 매 학기 개설한다.

② 개별연구지도 과목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에 대해 최고 6학점까지 인정이 되고, 석·박사통합학위과정에 대해서는 8학점까지 인정된다.

③ 각 개별연구지도 과목은 2학점이며, 지도교수로부터 개별적인 과제를 부여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제15조(수강과목) 학생의 수강과목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하고 학생은 학과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16조(수료 및 이수학점) 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하고, 이 중 전공학점은 21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4학점으로 하고, 이 중 전공학점은 4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학생은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규정에 따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④ 타 학과에서 개설된 대학원 과목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전공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17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② 연구등록학기를 제외하고, 학생은 학기당 최소 1과목 이상을 신청해야한다.

제18조(학점등급) 본 학과의 학점등급은 A+, A0, A-, B+, B0, B-, C+, C0, C-, F, W(Withdraw), P/NP(Pass/NonPass)로 구분한다.

제19조(이수학점 인정) ①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율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이상 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1.7)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 ②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은 3.0(4.3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국내·외의 다른 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취득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각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수료학점의 2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학사경고) 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제5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21조(종합시험 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지도교수를 배정받고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신청한 자로서 【석사학위 종합시험 응시원서】를 공고된 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신청한 자로서 【박사학위 종합시험 응시원서】를 공고된 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으로 한다.

③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48학점 이상 신청한 자로서 【박사학위 종합시험 응시원서】를 공고된 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으로 한다.

제22조(종합시험 시기) 종합시험은 학기 중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일시는 시험일 2주전까지 학과 주임교수가 공고한다.

제23조(종합시험 시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2과목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3과목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본 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석사학위 취득과정에서 선택한 종합시험 과목을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중복하여 선택할 수 없다.

③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5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제24조(종합시험 시행 및 합격) 종합시험은 Class In 형식으로 시행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7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하며,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에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제25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대학원이 인정하는 TOEFL, TOEIC, TEPS 점수로, 제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TOEFL(PBT:500점,CBT:197점,IBT:73점) 이상, TOEIC 580점 이상, TEPS 450점 이상을 받으면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학업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는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해외에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해외에서 3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자로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학과 외국어시험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개정 2018.05.02.>

제6장 학위논문

제26조(논문지도교수 배정) ① 본 학과의 학생은 제2학기가 끝나기 이전에 지도교수를 선택하여야 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3.21.>

② 지도교수는 공과대학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본 협동과정의 학사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 내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27조(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과 주임교수로부터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지도교수로부터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학위논문 양식 및 규격) ①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논문의 영문작성을 의무화한다. 단, 영문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하에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의 규격은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3인의 학과교수 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과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학교 전임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은 전공분야 및 논문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된 35조 7항에 의해 졸업요건으로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위원회 운영위원이 포함해야한다.<개정 2018.09.14.>**

②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5인의 학과교수 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과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학교 전임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은 전공분야 및 논문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된 35조 7항에 의해 졸업요건으로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위원회 운영위원이 포함해야한다.<개정 2018.09.14.>**

③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학과교수로 정한다.

④ 심사위원 자격요건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내규를 따른다.

제30조(학위논문 예비심사) ① 예비심사의 일시는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예비심사일 3주 전까지 예비논문을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이 지연될 경우 예비심사일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③ 예비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은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정된 35조 7항에 의해 졸업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예비심사와 본심사사이 기간에 예비심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연구로 중간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간심사는 본심사 3주 전에 통과되어야 한다. 중간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은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추가 2018.09.14.>**

제31조(학위논문 본심사) ① 학생은 본심사 1주 전까지 【학위논문 제출자격 확인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교수는 이를 검토한 후 모든 자격조건이 만족된 경우에만 논문제출 자격이 있음을 통보한다.

② 본심사의 일시는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예비심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을 서면으로 각 심사 위원들에게 본심사 2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심사는 취소되며, 심사일정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개정된 35조 7항에 의해 졸업요건으로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 중간심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을 서면으로 각 심사 위원들에게 본심사 2주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심사는 취소되며, 심사일정을 재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09.14.>

④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은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학위논문 재심사)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제33조(학위논문 제출 시한) ①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에, 석·박사 통합과정에서는 8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 제1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34조(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본 학과의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 이상인 자
3.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5.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지도받은 자
6.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 중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가. 국내외 학술행사에서 2회 이상 학술발표 또는 초청강연을 한 자
(발표 및 강연 예정인 경우, 해당 학술행사의 세부행사 진행표 제출)
 - 나. 국내외 학술지에 1회 이상 투고 또는 게재한자
(투고증명서 또는 게재확정증명서 제출)

② 모든 학술연구발표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를 제출자격으로 인정한다. 단, 지도교수가 제 1저자인 경우에는 제 2저자까지 인정하고, 동일논문 또는 발표를 두 사람의 제출자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제35조(박사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본 학과의 박사과정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 이상인 자
3.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5.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지도받은 자
6.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가. 국내외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 학술발표 또는 초청강연을 한 자
(발표 및 강연 예정인 경우, 해당 학술행사의 세부행사 진행표 제출)
 - 나. 국내외 전문학술지(SCI, SCIE, SSCI, KCI)에 1편 이상 논문게재(또는 게재확정)한 자이거나, 또는 학과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저서, 정책실현 등)을 갖춘 자<개정 2018.09.14.>
 - 단, 국내외 학술행사 발표 1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지 1편으로 대체 가능함<개정 2018.09.14.>

② 모든 학술연구발표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를 제출자격으로 인정한다. 단, 지도교수가 제 1저자인 경우에는 제 2저자까지 인정하고, 동일논문 또는 발표를 두 사람의 제출자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본 학과의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5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 이상인 자
3.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4.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5.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지도받은 자
6. 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가. 국내외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 학술발표 또는 초청강연을 한 자
(발표 및 강연 예정인 경우, 해당 학술행사의 세부행사 진행표 제출)
- 나. 국내외 전문학술지(SCI, SCIE, SSCI, KCI)에 1편 이상 논문게재(또는 게재확정)한 자이거나, 또는 학과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저서, 정책실현 등)을 갖춘 자<개정 2018.09.14.>
- 단, 국내외 학술행사 발표 1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지 1편으로 대체 가능함<개정 2018.09.14.>

② 모든 학술연구발표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를 제출자격으로 인정한다. 단, 지도교수가 제 1저자인 경우에는 제 2저자까지 인정하고, 동일논문 또는 발표를 두 사람의 제출자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박사학위명칭) ① 본 학과의 박사 학위는 “공학박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공학박사” 또는 “기술정책박사” 중 학위를 선택할 수 있다.

1. 산업과기술1(TEP8001), 산업과기술2(TEP8021), 기술정책세미나1(TEP8011), 기술정책세미나2(TEP8012), 과학기술정책론(TEP8002), 기술가치평가론(TEP8003), 기술경제와정책(TEP9002), 지식경제와산업정책(TEP8004) 중 9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5(4.3만점) 이상인 자

제7장 조직

제38조(구성) 본 학과에는 학과주임교수, 공과대학 기획부학과장과 연구부학과장, 공학연구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학과교수와 연구논문지도교수로 구성된 교수회의를 둔다.<개정 2018.03.21.>

제3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 학과의 주임교수가 위원장이 되고,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3.21.>

- ② 본 학과의 모든 운영 및 행정업무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과 주임교수가 책임지고 수행하며,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의 소집이 불필요할 경우 사전 통보한다.
-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토의 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신설, 수정 및 폐지
3. 학과 교과목의 구성, 운영, 신설,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과 교과목 이수 및 수업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학점교환 및 학점이전에 관한 사항
6. 교과목 담당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7. 박사 입학전형 및 지도교수 배정
8. 박사 종합시험, 학위논문심사 및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9. 대학원생 장학관련 업무
10. 조교 및 강사 배정
11. 기타 사항

제8장 장학금

제41조(장학금)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본 학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재학기간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목적) 본 내규는 과정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사무관장) 본 과정의 장학 업무는 주임교수가 관장한다.
- ③ (장학금 종류 및 선발 기준) 지급되는 장학금은 매년 대학원에서 편성하는 장학금으로 연 2회 학기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선발 및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선발 기준

- 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신입생.
- 나.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 다. 과정의 발전에 봉사 기여한 학생.
- 라. 대학원 연세우수학생II 장학생 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

2. 지급 기준

- 가. 해당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급

제9장 준용

제42조(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대학원학칙 및 대학원 내규에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9월 1일자로 수정되었으며 2015년 9월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2월 5일자로 제 4조의 일부 수정 및 제 37조가 신설 되었으며, 2016년 3월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3월 21일자로 수정되었으며 2018년 3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5월 2일자로 수정되었으며 2018년 5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9월 14일자로 수정되었으며 2018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